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32
----------	-------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 의 자 : 이상식 · 이수진 · 복기왕
이정문 · 모경중 · 김준혁
이재강 · 이기현 · 임호선
이용선 · 김병주 · 서영석
이해식 · 이강일 의원
(14인)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 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하는데, 우키시마호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한 한국인들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일본국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또는 추모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7조).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대한민국 국적의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7조(우키시마호 침몰 관련 재단지원 등) ①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또는 추모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